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운영규정

제정 2022.07.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해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이하 'HiVE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이 규정은 교육부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HiVE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본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 (운영체제)

사업의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장은 기본계획과 지침에 따른 HiVE사업의 수행을 위한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전담조직(이하 'HiVE센터'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사업전담조직)

① **사업전담조직**은 총장이 HiVE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임명하고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으며 HiVE센터를 관리·감독한다.

1. 사업추진 기본계획 및 수행계획의 수립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센터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진행과 관련한 본교의 각종 위원회 및 구성원의 의견을 수

렵하고 반영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능별 하부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사업전담조직에는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 팀장, 팀원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 (사업기간)

- ① 사업기간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업기간을 벗어난 사업은 집행할 수 없다. 단,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사업계획 수립)

- ① HiVE센터는 계열(학과), 행정부서,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② HiVE센터는 수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행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 사업개요 및 세부사업계획
 - 3. 자체 사업운영지침 및 자체평가 계획
 - 4. 성과지표 및 성과 목표
 - 5. 그 밖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사업의 운영)

HiVE센터는 관계 법령과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 ① 총장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평가를 위하여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장 사업비의 편성 및 집행

제11조 (사업비의 구성)

HiVE사업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HiVE사업의 국고 지원금과 지방비 지원금으로 한다.

제12조 (사업비의 집행)

- ① 사업비는 수행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되 본교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 ③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말까지로 하며 해당연도

사업비는 당해연도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 사업관련 훈령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체 사업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⑤ 그 밖에 사업비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집행절차)

- ① 사업관련 훈령에 따라 모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출납하며 사업비 통장에 입금된 국고지원금 및 지방비지원금은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 행위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
- ② 사업비는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한다.
- ③ 훈령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사업종료 후 5년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 (외부평가)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HiVE사업 전반의 사업 성과점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사업과제들의 성과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 관련 법률, 법령, 규칙, 훈령 및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2022.07.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